

학회소식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국회 법제실

국회사무처 법제실(실장 임재주)과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유환 교수),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 교수)는 지난 7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헌 70주년을 기념해 '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우리나라와 미국·일본·프랑스·독일 등 13개국의 의회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여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와 시민참여 요구가 늘고 있는 입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과 헌법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구조 변화와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1세션에서는 박균성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입법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기 소르망(Guy Sorman) 전 파리정치대학 교수와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등이 발표했다.

'시민의 입법참여와 헌법'을 주제로 열린 2세션은 '국민의 지위·역할: 국가의사형성(입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최대권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데이비드 숄츠(David Schultz) 미국 미네소타 대학 교수와 차진아(44·사법연수원 3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초대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형성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 시간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법학자들이 각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임 실장은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해외 학계·의회 지원기구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 국회의 입법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럽헌법학회(회장 홍완식 교수)

유럽헌법학회(회장 홍완식 교수)는 지난 2018년 7월 19일(목) 15:00-18:0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8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제도: 변해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 집시법상 집회시위금지장소에 대한 연구: 이희훈 교수 (선문대학교)
- 사회적 안전망과 국가의 책임 : 김동련 교수 (신안산대학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교수)·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유환 교수)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유환 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교수)은 지난 6

월 22일(금)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국내 학계 전문가와 유럽의 저명한 공법 학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와 유럽의 행정절차법 개혁동향에 대해 비교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나누어 독일, 프랑스, 한국의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의 라이너 아놀드(Rainer Arnold) 교수와 프랑스 엑스-마르세이유 대학의 자비에 필립(Xavier Philippe) 교수가 독일과 프랑스 법제에

대해 발표한 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가 ‘한국의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국제적으로 행정절차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독일과 프랑스 법제에 대해 비교 논의한 내용들은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개혁에 많은 시사점을 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유환 한국공법학회장 또한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상 ‘적법절차원리’와 행정법의 ‘행정절차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다룸으로써 헌법과 행정법의 통합적인 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 정

양창수 前 대법관(현 한양대 법전원 석좌교수)

민법학의 대가인 양창수(66·사법연수원 6기) 前 대법관이 지난 18일 현행 민법에 대해 “시행 이후 60년 가까이 쌓여온 사회·경제적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며 대대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재산, 계약, 가족관계 등을 규율하는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가치와 상황 변화

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관은 이날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31회 입법정책포럼에서 “여행계약이 새로운 전형계약으로 추가되는 등 여러 차례 민법 개정이 있었지만 총칙이나 물권법, 채권법 등의 수정이 거의 없는 부분적 개정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